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사방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송미령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고, 사방지로 지정한 지역은 법 제14조에 따라 입목·죽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,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해제 요건에는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에 대해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방사업 이후 5년간 사유지에 대한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사방사업 시행 후 1년이 지난 사방지에 대해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사방지 지정해제 요건을 완화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.

또한, 사방시설 유지관리 지침(산림청장 고시)과의 체계를 보완하고 사방시설 점검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대상, 종류 및 횟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

3. 주요내용

가. 사방지 지정해제 요건 완화(안 제17조제4항)

-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사방지 직권해제가 가능한 기간을

사방사업 시행 후 “5년”이 지난 사방지에서 사방시설의 훼손방지 및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감안하여 사방사업 시행 후 “1년”이 지난 사방지로 완화

나. 사방시설 점검대상 및 종류 등 명확화(안 제12조 관련 별표 2)

- 1) 사방시설 점검대상에서 준공 후 4년이 지난 “야계사방사업의 사방시설”을 “사방댐”으로 구체화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추가
- 2) 정기점검에 준공 후 “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”에서 “10년 이하”를 삭제하여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사방시설은 2년 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함
- 3) 현행 점검 횟수로만 규정된 사항을 점검 종류 및 횟수로 명확히하고 하자점검에 대한 내용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호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점검기관의 해제 의견을 받아야 한다.

제17조제4항제1호 중 “5년”을 “1년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2호가목1) 중 “법 제3조제3호”를 “법 제3조제3호다목”으로, “야계 사방사업의 사방시설”을 “사방댐”으로 하고, 같은 목 2)를 3)으로 하며, 같은 목에 2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호 나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중 “점검”을 “점검의 종류 및”으로 하며, 같은 목 1) 본문 중 “1년”을 “사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사방시설에 대하여 1년”으로 하고, 같은 1) 단서 중 “이상 10년 이하”를 “이상”으로, “경우에는”을 “점검은”으로 하고, 같은 목에 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) 사방시설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

3) 하자점검 :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60조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사방 시설에 대하여 공사의 하자로 인한 침하·균열 및 누수 등의 발생여부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사방지의 지정해제) ① ~ ③ (생략) 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 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”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지로서 사망시설 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 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 요가 없는 때를 말한다.	제17조(사방지의 지정해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제1호 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점검기 관의 해제 의견을 받아야 한다.
1. 사망사업 시행 후 <u>5년</u> 이 지난 사방지 2. (생략)	1. ----- <u>1년</u> ----- ----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■ 사망사업법 시행령 [별표 2] 사망시설의 관리·점검·안전진단·안전조치(제12조 관련) 1. 사망시설의 관리 사망시설 관리자는 사망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. 2. 사망시설의 점검 가. 점검 대상 1) 준공 후 4년이 지난 법 제3조제3<u>호</u>에 따른 야계 사망사업의 사망시설 <신설> 2) 그 밖에 사망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시설 나. 점검 횟수	■ 사망사업법 시행령 [별표 2] 사망시설의 관리·점검·안전진단·안전조치(제12조 관련) 1. 사망시설의 관리 사망시설 관리자는 사망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. 2. 사망시설의 점검 가. 점검 대상 1) 준공 후 4년이 지난 법 제3조제3<u>호다목</u>에 따른 사망댐 2) 사망시설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3) 그 밖에 사망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시설 나. 점검 종류 및 횟수

1) 정기점검 : <u>1년에 1회 이상</u> 실시한다. 다만, 준공 후 <u>5년 이상 10년 이하</u>의 기간이 지난 사방시설의 <u>경우에는</u>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. 2) 수시점검 :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되어 사방시설 점검이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. <신설> (이하생략)	1) 정기점검 : <u>사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</u> 점검이 필요한 사방시설에 대하여 <u>1년에 1회 이상</u> 실시한다. 다만, 준공 후 <u>5년 이상의</u> 기간이 지난 사방시설의 <u>점검은</u>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. 2) 수시점검 :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되어 사방시설 점검이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. 3) 하자점검 :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0조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사방시설에 대하여 공사의 하자로 인한 침하·균열 및 누수 등의 발생여부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 (이하생략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산사태방지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271